

憲法改正試案對比表

現行憲法	憲法改正試案			備考
	民主正義黨	新韓民主黨	한국국민당	
<p>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的 障 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을 받지 아니한다. ②(現行과 같음)</p>	<p>②(現行과 같음)</p>		
<p>第108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 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으로 인정 할 때에는 憲法委員會에 提請 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 한다. ②命令·規則·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 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 은 이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.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 判을 할 수 있다. 行政審判 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, 司</p>	<p>第108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 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 진다. ②(現行과 같음) ③(現行과 같음)</p>	<p>第102條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 되는 與否는 大法院이 이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 진다. ②命令·規則·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 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적으로 審査할 權限 을 가진다. ③(削除)</p>	<p>第103條 (違憲違法與否審 査權)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 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이 이를 최종 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. ②(現行과 같음) ③(現行과 같음)</p>	<p>第106條의 法律이 憲 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 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 法院은 最終적으로 審 査할 權限을 가진다. ②命令·規則·處分이 憲 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 終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.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.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 로 정하되, 司法節次가 準 用되어야 한다.</p>

憲法改正試案對比表

現行憲法	憲法改正試案			備考
	民主正義黨	新韓民主黨	한국국민당	
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.				
第109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,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.	第109條 (現行과 같음)	第103條 (現行과 같음)	第104條 (大法院의 規則制定權) (現行과 같음)	
(新設)		第104條 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은 大法院判事定數의 5分の 3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.	第105條 (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) 政黨解散을 命하는 判決은 大法院判事定數의 5分の 3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.	
第110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. 다만,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.	第110條 (現行과 같음)	第105條 (現行과 같음)	第106條 (裁判公開의 原則) (現行과 같음)	
第111條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會議을 들 수 있다	第111條 (現行과 같음)	第106條 ① (現行과 같음)	第107條 (軍事裁判) (現行과 같음)	

憲法改正試案對比表

現行憲法	憲法改正試案			備考
	民主正義黨	新韓民主黨	한국국민당	
<p>②軍法會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.</p> <p>③軍法會議의 組織·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.</p> <p>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·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, 哨兵·哨所·有害飲食物供給·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.</p>		<p>②(現行과 같음)</p> <p>(現行 第3項 削除)</p> <p>③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·軍屬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 哨兵·哨所 有害음식물 供給 포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.</p>		④ (削除)
<p>第6章 憲法委員會</p> <p>第112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.</p> <p>1.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</p> <p>2. 彈劾</p> <p>3. 政黨의 解散</p>	<p>第7章 憲法委員會</p> <p>第112條 ①憲法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.</p> <p>1. 彈劾</p> <p>2. 政黨의 解散</p> <p>3. 國家機關間,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</p>	<p>(削除)</p> <p>(削除)</p>	<p>(削除)</p> <p>(削除)</p>	(削除)

憲法改正試案對比表

現行憲法	憲法改正試案			備考
	民主正義黨	新韓民主黨	한국국민당	
<p>②憲法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, 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.</p> <p>③第2項의 委員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,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.</p> <p>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.</p>	<p><u>體 相互間의 權限爭議</u></p> <p>② (現行과 같음)</p> <p>③第2項의 委員중 3人은 首相이 指名하는 者를,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,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.</p> <p>④憲法委員會의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首相이 指名하는 者를 大統領이 任命한다.</p>			
<p>第113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,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.</p> <p>②憲法委員會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여할 수 없다.</p> <p>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</p>	<p>第113條 ①憲法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,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.</p> <p>② (現行과 같음)</p> <p>③憲法委員會 委員은 彈劾 또</p>	(削 除)	(削 除)	(削 除)

憲法改正試案對比表

現行憲法	憲法改正試案			備考
	民主正義黨	新韓民主黨	한국국민당	
<p>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④憲法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.</p>	<p>는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.</p> <p>④(現行과 같음)</p>			
<p>第114條 ①憲法委員會에서 法律의 違憲決定, 彈劾의 決定 또는 政黨解散의 決定을 할때에는 委員6人 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.</p> <p>②憲法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.</p>	<p>第114條 ①彈劾 및 政黨解散의 決定은 委員 6人以上の 贊成이 있어야 한다.</p> <p>②(現行과 같음)</p>	(削除)	(削除)	(削除)
<p>第7章 選舉管理</p> <p>第115條 ①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.</p> <p>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,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</p>	<p>第8章 選舉管理</p> <p>第115條 ①(現行과 같음)</p> <p>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首相이 指名하는 3人,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</p>	<p>第4節 選舉管理</p> <p>第107條 ①選舉管理의 公正을 期하고,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.</p> <p>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 大法院判事會議</p>	<p>第4節 選舉管理</p> <p>第108條(選舉管理委員會)</p> <p>(現行과 같음)</p>	<p>第6章 選舉管理</p> <p>第110條의 選舉와 國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.</p> <p>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 大法院判事會議에서 互選한다.</p>